

◎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-310호

「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6월 14일

산업통상부장관

**「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부동산등기법 상의 ‘예고등기제도’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, 특허취소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,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증 재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부동산등기법,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

(안 제3조·4조·13조·53조)

- 1) 부동산등기법의 ‘예고등기제도’가 폐지(‘11년)됨에 따라,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
- 2)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상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

나.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

권리이전등록신청서 ‘등록증 재발급’ 항목을 추가하고, 제3자의 직권 말소 요청을 위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인 편의 도모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 : 등록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 정부 대전청사 4동

- 전자우편 : [cjhksj@korea.kr](mailto:cjhksj@korea.kr)

- 팩스 : 042-472-3467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([www.kipo.go.kr](http://www.kipo.go.kr)) 게시판(책자/통계>법령 및 조약>입법예고)을 참고하시거나, 특허청 등록과(전화 042-481-5233, 팩스 042-472-346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